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lgium: Final version, circular letter on transfer pricing \(February 26th, 2020\)](#)

벨기에, 이전가격 관련 최종 지침서 발표

2020년 2월 25일 벨기에 세무당국은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 계획(BEPS Action Plan) 상의 특정 이전가격 주제와 관련한 본 세무당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최종 지침서(Circular letter 2020/C/25)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17)과의 일관성

본 최종 지침서(Circular letter 2020/C/25)는 2017년에 개정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치합니다.

우선 본 지침서는 정상가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간의 기존 계약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기능분석 수행에 따라 규명된 경제적 실질이 계약조건과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March 23rd,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상이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계약조건보다 우선시되고, 벨기에 세무당국은 해당 계약조건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3년 주기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결과가 정상가격 사분위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 지침서 초안에서는 분석대상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결과가 사분위범위 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이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해당 문구는 최종 지침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지침서는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s, 이하 "HTVI") 관련하여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무형자산 평가 관련 접근법과 2018년 6월 21일에 OECD에서 발행된 BEPS Action Plan #8(HTVI), #10(이익분할방법)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므로 벨기에 세무당국은 사전에 결정된 이전가격 약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평가 시 거래가 완료된 후 재산정한 정상가격을 사전 약정에 대한 근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서 초안에서는 세무당국이 이와 같은 정상가격 원칙을 2015년 10월 5일 이후에 발생한 HTVI 관련 특수관계거래에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명시한 바 있으나, 해당 문구는 최종 지침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지침서는 저부가가치 용역(Low value-adding service) 관련하여 정상가격 산출 시 간소화된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이 간소화된 접근방법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원가에 5% 마진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지침에는 고정사업장 대한 소득 귀속과 관련하여 공인된 OECD 접근방법("Authorized OECD approach")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 접근방법 하에서 고정사업장 귀속이유는 "만약 PE가 동일·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at arm's length) 별었을 이윤"을 지칭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 거래에 대한 지침

본 지침서는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 거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2월 발행된 금융거래에 대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는 특수관계자간 자금조달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을 채택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에서 확인되는 벨기에 세무당국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 내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예: 다국적기업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그룹 소속 회사로서 얻을 수 있는 상향된 신용 등급의 혜택)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보증 대가 산정 시 편익접근법(Yield approach)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캐시풀링(Cash pooling) 참여법인은 동일한 신용 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캐시풀링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은 시가 이상의 용역 보수를 수취할 수 없으며, 해당 보수는 비용접근법(Cost-based approach)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려사항

최종 지침서에는 다양한 이전가격 주제에 대한 벨기에 세무당국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전반적인 조세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본 지침서는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 거래 관련 2020년 2월에 발행된 금융거래 관련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이전가격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기존의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 정책을 재검토하여 OECD 및 벨기에 세무당국의 새로운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Hong Kong: Arrangement for automatic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with China\(March 5th, 2020\)](#)

홍콩, 중국과 국가별보고서 자동 교환 합의

동 내용은 직전 뉴스레터(중국: 국가별보고서 관련 업데이트; 중국과 주요 국가간 정보 공유에 따른 신고의무, 2020.03.11 발행)의 연장으로 당시 중국과 홍콩 세무당국이 2020년 3월 31일을 기한으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대한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홍콩 세무당국은 2020년 3월 4일자로 홍콩과 중국이 국가별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약정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세법 상 거주자로서 최종 모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신고의무가 있는 그룹의 홍콩 소재 계열사는 홍콩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동 홍콩 계열사들은 2020년 3월 31일까지 CbC Reporting Portal을 통하여 홍콩 세무당국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notification).

고려사항

홍콩과 중국간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은 중국에 기반을 두면서 신고의무가 있는 그룹의 홍콩 소재 납세의무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동 홍콩 소재 납세의무자들은 기존에 내국세 조례 58F 조에 의거하여 제출의무에 대하여 세무당국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금번 합의로 인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제출의무 면제 대상임을 통지하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들은 해당 통지 기한이 2020년 3월 31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교환 합의는 홍콩과 중국의 세무당국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보다 빈번하고 시기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그룹 기업 간의 이익 및 사업활동 분배가 세무당국에 공개되어, 중국 및 홍콩의 세무당국이 더 많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홍콩의 납세의무자들과 중국 소재 특수관계자 거래상대방들은 강화된 교환 매커니즘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양측 세무당국에 제공되기 전에 회사의 현재 이전가격 정책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문서화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BEPS Action Plan을 자국 세법 개정안에 포함 (KPMG Ukraine에서 제공, March 12th 2020)

2020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BEPS Action Plan과 관련된 조치를 우크라이나 세법(No. 1210)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2020년 3월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다음의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규정(CFC Rule)
2.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에 전제조건이 되는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
3. 우크라이나 원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 확대
4. 배당간주: 우크라이나의 비거주자와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벗어나는 경우, 조정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5. 고정사업장의 정의 확대
6.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산출 방법 개정

7. 우크라이나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세액 산정 방법
8. 과소자본세제 개정
9. 3가지 이전가격 문서화: 우크라이나 납세의무자들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및 Notification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10. 이전가격거래 관련 사업 목적 유효성 테스트: 우크라이나 납세의무자들은 (1) 거래가 이전가격 목적에 대한 상업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2)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용역 구매 관련 비용이 사업목적 유효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목적으로, KPMG Global에서 제공하고 있는 BEPS 국가별 도입현황 자료 (2020년 3월 19일 기준)의 우크라이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별보고서
 - 대상: 전년도 연결매출이 7.5억 EUR(약 1조 원)을 초과 다국적 기업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미제출 시 벌금: 약 52만 UAH(약 23백만 원)
2. 통합기업보고서
 - 대상: 전년도 연결매출이 5천만 EUR(약 668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우크라이나 세무당국 요청 시 60일 이내 제출)
 - 내용: OECD 가이드라인과 동일
 - 언어 및 제출방식: 우크라이나어로 작성 및 서면으로 제출
 - 기타사항: 포함된 별첨 및 재무자료 등의 자료 번역 의무 존재
 - 미제출 시 벌금: 국가별보고서와 동일
3. 개별기업보고서 - 규정없음
 - 우크라이나는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없고, 현지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를 구비하도록 함. 동 보고서는 OECD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개별기업보고서와 비교하여 유사하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함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